

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6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6월 7일

3. 제정이유

○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(개정 1999. 4.30 시행 2000. 3. 1)되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

○ 우리 도내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지구개발계획은 토지이용의 고도화,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, 도시경관의 제고, 근린주구체계의 확립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함.(제3조)

○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에 있어서 근린주구는 반경이 400미터 이내이고 계획건설세대수는 1,000세대 이상 3,000

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지구중심의 면적은 근린지구 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미만으로 정하도록 함(제4조)

- 지구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중 유원지, 도살장, 공동묘지, 화장장,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, 가스공급설비,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, 자동차검사시설을 계획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.(제6조)
-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율, 지구면적 10,000제곱미터당 세대수 등 규모의 기준을 정함.(제7조)
- 근린공원은 지구당 1개소 이상으로 하고, 그 면적은 10,000제곱미터 이상 설치토록 기준을 정함.(제8조)
-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.(제9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도내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다만 개정된 법령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를 2년이 지나서야 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- 지구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, 도살장, 공동묘지, 화장장,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, 가스공급설비,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, 자동차검사시설을 계획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.(제6조)
-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율, 주구면적 10,000제곱미터당 세대수 등 규모의 기준을 정함.(제7조)
- 근린공원은 주구당 1개소 이상으로 하고, 그 면적은 10,000제곱미터 이상 설치토록 기준을 정함.(제8조)
-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.(제9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도내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 개정된 법령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를 2년이 지나서야 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